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의료원 명칭을 지역의료원으로 변경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16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지방의료원 명칭을 지역의료원으로 변경	2

I. 개요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1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5. 1.
- (3) 회 부 일 : 2025. 5.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입니다.

현행법은 법 전반에 걸쳐 ‘지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방의료원 명칭을 지역의료원으로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지방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지역의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u>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u>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지방의료원</u> 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역의료원</u>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u>지방의료원</u> ”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u>지역의료원</u> ----- ----- -----.
제3조(법인) <u>지방의료원</u> 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법인) <u>지역의료원</u> 은-----.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u>지방의료원</u> 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u>지방의료원</u> 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 -- <u>지역의료원</u> ----- -----. ----- <u>지역의료원</u> ----- -----.
② <u>지방의료원</u> 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u>지역의료원</u> 은----- -----.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u>지방의료원</u>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u>지방의료원</u>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u>지방의료원</u>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u>지방의료원</u>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가 <u>지방의료원</u>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u>지방의료원</u>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u>지방의료원</u>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u>지방의료원</u>의 명칭 등) ① <u>지방의료원</u>의 명칭은 해당 <u>지방의료원</u>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③ -----<u>지역의료원</u>----- ----- -----. ④ ----- ----- ----- -----. -----. 1. (현행과 같음) 2. <u>지역의료원</u>----- 3. <u>지역의료원</u>----- ----- 4. -----<u>지역의료원</u>의----- ----- ⑤ -----<u>지역의료원</u>----- ----- ----- -----. ⑥ -----<u>지역의료원</u>의----- ----- ----- <u>지역의료원</u>의----- -----. 제5조(<u>지역의료원</u>의 명칭 등) ① <u>지역의료원</u>의-----<u>지역의료원</u>----- ----- -----.

현행	개정안
② 이 법에 따른 <u>지방의료원이</u>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정관) ① <u>지방의료원의</u>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략) ② <u>지방의료원의</u>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① <u>지방의료원은</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8. (생략) ② <u>지방의료원은</u>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u>지방의료원에</u>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 3. (생략) ② <u>지방의료원의</u>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u>지방의료원의</u>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u>지방의료원의</u>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u>지역의료원이</u>----- ----- -----. 제6조(정관) ① <u>지역의료원의</u>----- ----- -----. 1. ~ 12. (현행과 같음) ② <u>지역의료원의</u>----- ----- -----. 제7조(사업) ① <u>지역의료원은</u>----- -----. 1. ~ 8. (현행과 같음) ② <u>지역의료원은</u>----- ----- ----- ----- -----. 제8조(임원) ① <u>지역의료원에</u>-----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지역의료원의</u>----- -----<u>지역의료원의</u>----- ----- ----- ----- -----. ③ <u>지역의료원의</u>----- ----- -----

현행	개정안
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u>지방의료원의</u>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감사는 <u>지방의료원의</u>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생략) 제9조(이사회) ① <u>지방의료원에</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 6. (생략) ② ~ ⑥ (생략)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u>지방의료원</u>을 대표하고 <u>지방의료원의</u>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생략)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지방의료원의</u> 임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략) ② <u>지방의료원의</u>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생략)	----- <u>지역의료원의</u>-----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지역의료원의</u>-----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회) ① <u>지역의료원에</u>-----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원장) ① -----<u>지역의료원</u>을----- -----<u>지역의료원의</u>-----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u>지역의료원의</u>-----. 1. ~ 5. (현행과 같음) ② <u>지역의료원의</u>----- ----- -----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2조(직원의 임면) <u>지방의료원의</u>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u>지역의료원의</u> ----- ----- -----.
제13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u>지방의료원의</u>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3조(겸직) ① ----- ----- ----- ----- ----- ----- ----- <u>지역의료원의</u> ----- -----.
② 제1항에 따라 <u>지방의료원의</u>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u>지역의료원의</u> ----- ----- ----- -----.
제13조의2(<u>지방의료원</u> 규정의 제정·개정) <u>지방의료원의</u>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u>지역의료원</u> 규정의 제정·개정) <u>지역의료원의</u> ----- ----- ----- ----- ----- -----.
제14조(사업연도) <u>지방의료원의</u>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연도) <u>지역의료원의</u> ----- -----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u>지방의료원의</u>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 ----- ----- <u>지역의료원의</u> -----

현행	개정안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지방의료원의</u>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u>지방의료원의</u>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지방의료원이</u>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u>지방의료원의</u>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u>지방의료원에</u>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u>지방의료원</u>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 등) ① ----- ----- -----<u>지역의료원의</u>----- ----- ----- -----. ② -----<u>지역의료원의</u>----- ----- ----- -----. ③ -----<u>지역의료원이</u>----- ----- ----- -----. ④ (현행과 같음) ⑤ -----<u>지역의료원의</u>-----<u>지역의료원에</u>----- -----. 제18조(재원) <u>지역의료원</u>은----- ----- ----- -----.

현행	개정안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u>지방의료원</u>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u>지역의료원</u> 은-----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u>지방의료원</u> 의 폐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지방의료원</u> 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u>지역의료원</u> 의 폐업 등) ① ----- <u>지역의료원</u> 이----- ----- ----- -----.
② <u>지방의료원</u> 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u>지방의료원</u> 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u>지역의료원</u> 의----- ----- <u>지역의료원</u> 의-----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지방의료원</u> 의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u>지역의료원</u> 이----- ----- ----- -----.
1. <u>지방의료원</u> 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1. <u>지역의료원</u> 의-----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u>지방의료원</u>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 <u>지역의료원</u> ----- -----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 -----

현행	개정안
따라 <u>지방의료원에</u>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u>지방의료원의</u> 경영 상태, <u>지방의료원이</u>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u>지방의료원의</u>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운영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21조의2(운영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지방의료원에</u>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u>지방의료원의</u>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u>지방의료원의</u>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u>지역의료원에</u>----- ----- -----. ----- ----- -----. ② -----<u>지역의료원의</u>-----<u>지역의료원이</u>-----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지역의료원의</u>-----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운영지침) ① ----- ---<u>지역의료원에</u>----- ----- ----- -----. -----<u>지역의료원의</u>----- -----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의료원의</u>-----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u>지방의료원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방의료원에</u>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 ----- ----- ----- <u>지역의료원이</u> ----- ----- ----- ----- <u>지역의료원에</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지방의료원이</u>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4. <u>지역의료원이</u> ----- -----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u>지방의료원의</u>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 <u>지역의료원의</u>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해당 <u>지방의료원의</u>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 <u>지역의료원의</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지방의료원의</u>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 ----- <u>지역의료원의</u> ----- -----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지방의료원의</u>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② ----- ----- <u>지역의료원의</u> ----- -----

현행	개정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지방의료원</u>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u>지방의료원</u>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u>지방의료원</u>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생략) 12. 그 밖에 <u>지방의료원</u>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u>지방의료원</u>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생략) 제24조의2(통합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지방의료원</u>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	-----<u>지역의료원</u>의-----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 --<u>지역의료원</u>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지역의료원</u>에----- ----- ----- ----- 11. (현행과 같음) 12. -----<u>지역의료원</u>의----- ----- ----- ② -----<u>지역의료원</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통합공시) ① ----- ----<u>지역의료원</u>의----- ----- ----- -----

현행	개정안
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제24조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 때에는 해당 <u>지방의료원으로</u>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지방의료원에서</u>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u>지방의료원에</u>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u>지방의료원의</u>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u>지방의료원의</u>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지역의료원으로</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공무원의 파견) ----- -----<u>지역의료원에</u>----- ----- -----<u>지역의료원에</u>----- -----.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지역의료원의</u>----- ----- -----. ③ <u>지역의료원의</u>----- -----

현행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지방의료원</u> 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지역의료원</u> 에----- -----.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지방의료원의</u>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지역의료원의</u>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지방’을 중앙에 대한 위계·종속적인 개념을 지닌 명칭으로 보아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자치와 분권 시대에 보다 부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지방’ 용어를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어 있음(민형배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25. 5. 1.).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0308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1032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0328호)

□ 다만, 개정안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¹⁾은 ‘국가’에 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²⁾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료원이라는 용어는 위계·종속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의료원의 설립주체를 명확히 드러내는 명칭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자치·분권적인 정신을 법률에 담아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역으로 대체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방 및 지역이라는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용례를 정립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그 사유로는 ‘지방’이 헌법상 사용되는 용어인 점,³⁾ ‘지방’이라는 단어가 “어느 방면의 땅” 또는 “서울 이외의 지역”과 같이 위계성이 없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 ‘지역’의 사전적 의미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표 1]), 지방 및 지역이라는 용어가 현재 여러 법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동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3)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표 1] 지방 및 지역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

지방(地方)	지역(地域)
① 어느 방면의 땅	①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② 서울 이외의 지역	②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
③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③ 「체육」 구기 경기에서, 경기자가 맡고 있는 일정한 구간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셋째, 현재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4)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지방의료원은 포함되지 않음)”과 같이 보건의료 관계법률에서 지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이 존재하여,

지방의료원이 지역의료원으로 변경될 경우 이를 행정·의료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이미 존재하는 명칭과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의 시행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의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5)는 동법을 인용

4)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료원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료원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료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으로 한다.

④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료원”으로 한다.

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 시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의 법률을 나열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⁶⁾
및 「법인세법」⁷⁾은 동법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개정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법률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 추가
하여야 함.⁸⁾

- 둘째, 개정안 시행 시 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지방의료원을
신법에 따른 법인인 지역의료원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료원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료원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중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역의료원”으로 한다.

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상당기관의 지정·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당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다만 개정안 부칙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에 의하여 동 개정안의 개정 효력은 개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규정되지 않은 법령에도 미치게 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지방’ 및 ‘지역’ 간 개념 차이로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으로 변경 제안한 입법 취지에 일부 공감하나, 명칭 변경 효과 및 행정비용⁹⁾ 등을 종합 고려 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의료원’의 ‘지방’ 용어는 ‘지방공사의료원’부터(1983년) 사용되었고, ‘지방의료원’으로 명칭 변경(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 학계, 의료계 및 정부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정착된 명칭임.

※ 지방의료원 명칭 변천: 시·도립병원(~1983년) → 지방공사의료원(「지방공기업법」 적용, 1983~2005년) → 지방의료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2005년~현재)

-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책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현재 통상적으로 지역 병·의원을 총칭하여 ‘지역의료원’이라 지칭하고 있어 명칭 변경 시 ‘지방의료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며, ‘지방’과 ‘지역’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는 점도 고려 필요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지방’과 ‘지역’이 사전적인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제안이유에 일부 공감할 수 있으나,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 ‘지방’과 ‘지역’ 두 용어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9) 관련 조례 및 내부규정 개정, 법인 등기 등 인허가 사항 변경, 전산시스템 변경 등 행정·인력 등 소요예산

□ (대한의사협회) 지방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지역’이라는 용어로의 변경은 지역 의료원의 설립주체의 명확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며, 법 조문에서 여러 단어가 혼재되어 사용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 이해도 제고 측면에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도권과 대비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발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도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